

12.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802號 1995. 11. 18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 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②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별표 1의 2의 산업을 말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 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 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④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각 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⑤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 제1항(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 본문중 “각목”을 “각호”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자이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의 1주택(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제81조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8.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등 당첨소득

제85조 제1항 제1호중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1호 이상)의”를 삭제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8조 제2항”을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을 “제8조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재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권당첨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1

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2]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종구분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춤,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펠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전기절연 가공지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학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업종구분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p>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p> <p>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p>
6. 제1차 금속산업(27)	<p>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제품</p> <p>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p> <p>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p>
7.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28)	<p>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p> <p>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용접·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p>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p>가. 일반 목적용 기계</p> <p>나. 특수 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p>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p>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p> <p>나. 복사기</p>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p>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p> <p>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p> <p>다. 절연선 및 케이블</p> <p>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p> <p>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p> <p>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장비</p>

업종구분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가. 전자부품(광전관·방전관의외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가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 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비고〉 업종구분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 8. 4, 법률 제49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8조 제2항 및 별표 1의 2).
-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영 제13조의 2).
-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75조 제1항 제1호).
-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영 제81조).
- 마. 기업이 무주택종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 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영 제85조 제1항 제1호). 〈법제처 제공〉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